오산시의회 공고 제2026-14호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2월 27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조미선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○ 관내 도심지역 중심으로 주차 문제가 심화되는 만큼, 경찰 순찰차가 상시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획 설치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범죄 예방과 긴급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(안 제7조의3제1항)

○ 전용주차구획에 노면표지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의3제3항)

○ 자동차 견인 조치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정비함(안 제18조제2항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○ 제출기일 : 2026년 3월 4일까지

○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
○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
○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
○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
· 우편번호 : 447-701

· 주　　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
· 전　　화 : 031)8036-8031,　· 팩　　스 : 031)3036-8953

· 전자메일 : blue6017@korea.kr

오산시 조례 제 호

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3(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 “경찰차”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예방 및 그 밖에 긴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노면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18조제2항 전단 중 “이상”을 “이상(자동차가 분해·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7조의3(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서 “경찰차”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예방 및 그 밖에 긴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노면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.
제18조(주차장의 공용제한) ① (생략) ②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견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1개월 이상(자동차가 분해·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) 경과한 자동차를 견인하였을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에 따라 강제 처리할 수 있다. ③ (생 략)	제18조(주차장의 공용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----- ---------- 이상(자동차가 분해·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) ----------. 이 경우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